

# 2025년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사업요강



## 1. 사업 목적



1. 해외 필름마켓 계기 한국영화 해외세일즈 업체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2. 경쟁력을 지닌 한국영화 수출업체 육성을 통한 한국영화 수출 증대



##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 1.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한국영화의 해외 판매를 위해 연 1회 이상 마켓 참가계획이 있는 해외세일즈 전문 업체
지원내역	■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 및 비즈니스 지원
지원업체수 및 금액	■ 연간 20개 이내, 전년도 세일즈 실적(수출/상담) 고려 차등 지급 (업체별 지원최소금액 3백만원) - 전년도 지원 결과(세일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지원총액	■ 400백만원
신청 자격	■ 영화업 등록을 필한, 한국영화 해외세일즈 전문 업체 중 - 한국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3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업체 - 한국 단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20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업체 ※ 상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	----

### ■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 및 비즈니스 지원

<b>항공권</b>	마켓/전시회 별 업체당 2인, 지역별 기준금액 80% 이내 실비 지원 * 아래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참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교통비(항공포함) 제외 * 유류할증료 등 TAX 항공료 포함 인정, 여행사 취급수수료 불가
<b>부스개설</b>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온라인 마켓 참가비 포함)
<b>배지</b>	마켓/전시회 별 최대 2인, 실비 지원
<b>홍보마케팅</b>	옥외/매체 광고비, 외국어 홍보물(디자인/인쇄/영상 등) 제작비, 마켓 스크리닝비 등 * 광고홍보물 제작에 따른 번역비 포함
<b>계약활동 지원</b>	해외 수출 문서 및 선재물 발송비, 법률자문 및 공증비용 등
<b>기타</b>	한국영화진흥조합관 참가 우선권 부여, KOFIC SUPPORTS 뉴스레터 발행, 영화제 출품비 (단, 출품비는 지원금의 10% 한도 내에서 가능) 등

※ 위 용도 중 주최 측 취소, 연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용 승인 후 비용 인정(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50% 자부담 집행 의무)

### ■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 역	1인당 항공권 최대지원금 상한액(원)
동북아시아	480,000
동남아시아	800,000
서남아시아	1,120,000
오세아니아 / 러시아 / 중앙아시아	1,440,000
유럽 / 북미 / 아프리카 / 중동	1,920,000
중남미	2,240,000

지원금  
사용 용도

### ■ 지원대상 마켓

기 간	필름마켓	장 소
1	클레르몽페랑 단편필름마켓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2	유러피안필름마켓(EFM)	독일 베를린
3	홍콩 필름마켓(FILMART)	중국 홍콩
4	베이징 필름마켓	중국 베이징
5	칸 필름마켓(Marché du Film)	프랑스 칸
6	상하이 필름마켓	중국 상하이
7	안시 국제애니메이션마켓(MIFA)	프랑스 안시
8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캐나다 토론토
9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한국 부산
10	MIPCOM 마켓	프랑스 칸
11	도쿄필름마켓(TIFFCOM)	일본 도쿄
12	아메리칸필름마켓(AFM)	미국 라스베이거스
13	대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페스티벌(TCCF)	대만 타이베이
14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5	아시아 TV 포럼&마켓(ATF)	싱가포르

※ 상기 마켓 외의 마켓 및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필수.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 3. 사업 수행 조건

구분	내용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li> </ul> </li> <li>■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이거나, 제재 조치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 신청 불가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li> <li>■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li> <li>■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보조사업자</li> <li>■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 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업체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후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li> </ul> </li> <li>■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경우</li> </ul>

###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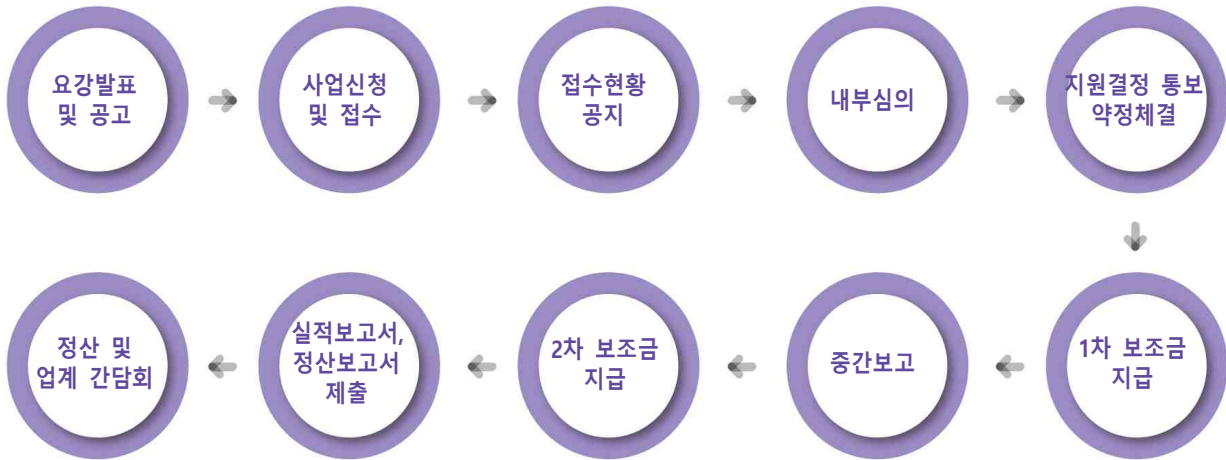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접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1. 31.(금) ~ 2. 14.(금) 18:00까지, 15일간</li> <li>※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코비즈 사이트(www.kobiz.or.kr) 회원가입 후 [해외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 [신청]</li> </ul>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사업신청서 (해외세일즈 작품목록 포함, KoBiz 내 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신청페이지 내 작품정보 등록 필요, 장편의 경우 3편 이상 등록, 단편의 경우 5편 내외 등록 후 작품 리스트 첨부(자체양식 활용)</li> </ul> </li> <li>■ 해외수출활동 및 예산집행 계획서 (위원회 제공 양식)</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영화업신고증</li> <li>■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li> <li>※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거나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li> </ul>



### 3. 지원 및 선정 절차



#### 1. 지원절차 흐름도



#### 2. 선정절차

- 위원회 자체 심사 실시
- 신청서류 기반 전년도 수출실적 및 자격요건 심사 후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



###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지원금 결정통보 및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2. 보조금 집행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지원대상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지원금 및 해외수출활동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 (세부용도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의 2)지원금 사용용도' 참조).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 3. 통지의무 및 승인

-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4. 수행명령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5.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중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 ☐ 정산기한: 약정종료일 이내
-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 상반기 결과보고서(보조금 집행현황, 해외세일즈 추진현황, 계약실적 등)
  - 최종실적/정산보고서 : 상반기 최종 결과보고서(해외세일즈 추진현황, 계약실적 등), 정산증빙자료 (비용집행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
  - 한국영화 수출 통계자료

## 6. 이월

-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 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약정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지원 대상 작품과 보조사업자(자연인인 경우)와 보조사업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 보조사업자(법인인 경우)의 제재대상행위 당시 대표자였던 자연인과 그 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에게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9. 정보공시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 5. 기타 의무사항



### 1.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 사업에 관여하는 소속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 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2. 근로환경 개선

-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 3.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 4. 성평등 정책

-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 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5. 연구 및 정책개발 목적의 정보제공 및 활용

-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 6. 문의처



-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신도원	051-720-4817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